

## 요양(의료)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 안내

- 한방급여약제 구입·청구 불일치 관련 -

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(의료)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공포 2018.9.28., 시행 2018.11.1.)」 및 「요양·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-215호, 시행 2020.9.24.)」에 따라,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(업무정지 또는 과징금)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.

금번 「한방급여약제 구입·청구 불일치」에 관한 자율점검은 ① 한방 급여약제별 구입 및 청구상세내역(수량, 금액 등) 일치하였는지, ②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하여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.

이와 관련, 귀 원의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( )년 ( )월부터 ( )년 ( )월 진료분(기관별 상이)에 대하여 상기 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,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자율점검대상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, 궁금하신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1) 자율점검 방법

#### - [자율점검사항]

- ① 한방 급여약제별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(수량, 금액 등) 일치여부 점검
- ②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

#### - [점검대상기간]

- ① 6개월: 기관별 반기별 청구금액 상위기간에 해당하는 진료분
- ② 36개월: 착오청구 확인 시 2018.1. ~ 2020.12. (36개월) 진료분 범위 내 추가 점검

#### - [제출기한] 자율점검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

#### - [제출서류]

- ① 착오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
  - 자율점검결과서
  - [붙임1]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진료기록부, 진료비 계산서(영수증, 세부내역서)
  - [붙임2] 한방급여약제 구입·청구 불일치 요청 약제의 거래원장 또는 거래명세서  
※ 엑셀 등 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저장장치로 제출
  - [붙임3] 자율점검 세부내역 또는 자체서식
- ② 착오청구 환수 동의 관련 서류 제출 또는 자율점검결과서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제출
- ③ 그 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#### - [제출방법] 동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

- \*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 불가
- \*\* (주소)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동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

#### - [문의처]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

이은진팀장 (☎ 033-739-5906), 최시연차장 (☎ 033-739-5941)  
 정현영과장 (☎ 033-739-5935), 한아름과장 (☎ 033-739-5933)  
 최경애대리 (☎ 033-739-5926), 신문원대리 (☎ 033-739-5945)  
 황수연대리 (☎ 033-739-5914), 최선영대리 (☎ 033-739-5946)

### 2) 자율점검 운영 절차



※ 착오청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조사 연계